

서울고등법원 2023. 9. 20 선고 2023나2020059 판결 [사해행위취소]

재판경과

서울고등법원 2023. 9. 20 선고 2023나2020059 판결

서울동부지방법원 2023. 4. 19 선고 2021가합114554 판결

전문

원고, 피항소인 A 주식회사

소송대리인 변호사 조지윤

피고, 항소인 B

소송대리인 변호사 서태용

변론종결 2023. 8. 16.

판결선고 2023. 9. 20.

제1심판결 서울동부지방법원 2023. 4. 19. 선고 2021가합114554 판결

주문

1.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.
2.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.

N

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

1. 청구취지

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,

가. 피고와 D 사이에 2018. 11. 30. 체결된 매매계약을 취소하고,

나. 피고는 D에게 서울동부지방법원 등기국 2018. 12. 3. 접수 제187932호로 마친

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(제1심판결 중 제1심 공동피고 C에 대한 부분은 C이 항소하지 않아 분리확정되었다).

2. 항소취지

제1심판결을 취소한다.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.

이 유

1. 제1심판결의 인용

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중 일부를 아래와 같이 변경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.

○ 제1심판결의 이유 중 각 “피고 B”을 “피고”로 “피고 C”을 “C으로”, “피고들”을 “피고와 C”으로 변경한다.

2. 결 론

그렇다면,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,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,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.

재판장 판사 김경란, 판사 권혁중, 판사 이재영

별지